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최혁진의원 대표발의)

| | |
|----------|-------|
| 의안 번호 | 17959 |
|----------|-------|

발의연월일 : 2026. 3. 31.

발 의 자 : 최혁진 · 이수진 · 조계원
김우영 · 김동아 · 전진숙
정혜경 · 윤종오 · 복기왕
손 솔 의원(10인)

제안이유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권위주의 정권, 군사정권 시절을 거치면서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와 폭력행위가 반복되었으며, 이러한 과거 정권의 억압적인 국가범죄에 대한 진실규명과 재발방지 및 반인권적 폭력행위를 근절하기 위한다 다양한 조치들을 시행하였으나 현행법상 공소시효와 소멸시효 제도로 인해 범죄자가 처벌을 면하거나 피해자가 정당한 배상을 받지 못하는 법적 한계가 존재함.

특히 국가가 조직적으로 사건을 조작·은폐한 경우, 피해자가 시효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형사재판을 하기 위한 공소시효의 적용배제조차 극히 일부의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적용됨에 따라 과거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재발방지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매우 큰 상황임.

이에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고, 반인

권적 국가범죄의 피해 당사자와 유족에게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적용을 배제하며, 피해자의 유족 등에게는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의 특례를 정하는 동시에 과거 반인권적 국가범죄 피해자 또는 그의 유족이 손해배상청구권을 제기하여 각하 또는 기각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 권리구제 방안을 두텁게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이 법에 의해 형사상·민사상 특례의 적용을 받는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정의함(안 제2조).
- 나.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배제함(안 제3조).
- 다.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인해 손해를 입은 피해자 본인 또는 유족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를 적용을 배제함(안 제4조).
- 라.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대해서는 이 법을 다른 법보다 우선 적용하고, 반인권적 국가범죄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제기하여 각하 또는 기각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 마.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특례 규정에 부진정소급효를 부여함(부칙 제2조).
- 바.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인한 피해자 본인 또는 유족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특례 규정에 진정소급효를 부여함(부칙 제3조).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별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기관 또는 그 종사자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헌법과 법률에 반하여 국민의 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거나 이를 조직적으로 은폐하는 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를 배제하고 국가권력에 의한 반인권범죄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특례를 정함으로써 국가권력의 도덕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고 사회정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인권적 국가범죄”란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공무원(「행정기본법」 제2조제2호나목의 공무원수탁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직무수행과정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범한 「형법」 제24장 살인의 죄, 제259조, 제262조의 죄

나.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형법」 제125조의 죄(사람을 중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한정한다)

다. 군의 지휘관·지휘자가 범한 「군형법」 제62조의 죄(사람을 중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한정한다)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2. “유족”이란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와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다만,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사망한 사람의 형제자매를 말한다.

제3조(공소시효의 배제) ① 제2조에 따른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는 경우에는 그 공범자에게도 효력을 미친다.

제4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인하여 생명, 신체, 재산상의 손해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은 피해자 본인 또는 유족의 「민법」 또는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재심사유에 관한 특례) ①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피해자 또는 유족은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제기하여 각하 또는 기각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에도 불구하고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의 소는 이 법이 시행된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나 소멸시효

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소시효의 배제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범한 범죄로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범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규정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